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19호

2023. 2. 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34호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2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229호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삼척시 공고 제2024-23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1
- 삼척시 공고 제2024-240호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삼척시 공고 제2024-24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0
- 삼척시 공고 제2024-250호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27
- 삼척시 공고 제2024-251호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29
- 삼척시 공고 제2024-253호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34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4-34호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삼척시장

1. 실시계획 개요

- 가. 사업명: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동 산41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낙석방지책 설치 L=800m
- 라. 사업비: 500백만원
- 마. 사업기간: 2024. 3월 ~ 2024. 12월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 비치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타부서 및 타기관 사업의 중복성과는 연계성은 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정라1지구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D등급 지정되어 있으며 해빙기 및 우기시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임
- 이에 붕괴위험지역 사면정비를 통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등 정주 여건은 개선하여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5.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재 원 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00	250	125	125	
2023년	100	50	25	25	실사연계
2024년	400	200	100	100	공사추진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해제하고 향후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033)570-38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삼척시 공고 제2024-229호

「삼척시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삼척시장

##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근무시간 이후 공인 보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인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 나. 근무시간 이후 공인 보관 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
- 다. 자치법규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내지”를 “~부터 ~까지”로
  - “의하여” → “따라”로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 2) 전화 : 033-570-3232
- 3) 팩스 : 033-570-3133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보조기관”을 “기관”으로,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를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이후에는 이증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삼척시 공인(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 ----- ----- ----- ----- ----- ----- -----</p>
<p>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예 의한 공인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p>	<p>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 기관----- ----- ----- ----- ----- ----- ----- ----- --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 -----</p>

⑥ (생략)

⑦ 제1항 내지 제6항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청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  
-----  
-----  
-----  
-----  
-----  
-----  
-----  
-----  
-----  
-----

제6조(공인의 등록) ① -----  
-----  
-----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인대장) -----  
----- 따라 -----  
-----  
-----  
-----  
-----  
-----  
-----.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



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 관수자 및 보관) ① (생략)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따라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  
-----  
-----  
----- 따른 -----  
-----

제13조(공인 관수자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  
후에는 이증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붙임 2]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235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4. 2. 5. ~ 2024. 2. 20.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4. 2. 21.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 정 오
	주 소 (대장상주소)	본동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1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690-2 주1 1층, 목조, 주택, 연면적(65.91㎡)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5.

##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                    |   |
|--------------------|---|
| 비<br><br><br><br>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469

삼척시 공고 제2024-240호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삼척시장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수수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세대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생활공과금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시 수수료 부과내용 삭제(안 제11조)
- 나. 수도요금 감면 대상 추가(안 제42조제5호)
  - 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감면 범위: 가구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상수도사업소
- 2) 전화 : 033-570-3523
- 3) 팩스 : 033-570-317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5호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수급자에”를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생략)</p> <p>② <u>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 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같다.</u></p> <p>③ (생략)</p>	<p>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2조(요금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기준대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량</p>	<p>제42조(요금 등의 감면) -----</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p> <p>-----</p> <p>----- <u>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u> 중 「<u>장애인복지법</u>」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p> <p>-----</p> <p>-----</p> <p>-----</p>

<p>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 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 ----- -----.</p>
--	-----------------------------------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고시 제2024 - 24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삼척시장

1. 목 적

침수위험 '나' 등급으로 지정된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주변에 상가 및 가옥이 산재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가 높아 '가' 등급으로 상향 변경하고 당초 사업지구만 포함된 지정면적에 침수범위를 포함하여 지정면적을 확대 함으로써 주민의 인명과 재산은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비고
		유형	등급	지정면적(m <sup>2</sup> )	
후진	삼척시 교동 413번지 일원	침수위험	나	28,000	당초
후진	삼척시 교동 413번지 일원	침수위험	가	147,000	변경

3. 공고기간 : 2024. 2. 8. ~ 2024. 3. 8. (29일간)

4. 의견제출

가.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붙임 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2. 8. ~ 2024. 3. 8. (29일간)

다.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하로 81(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

라. 문의처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033-570-3886)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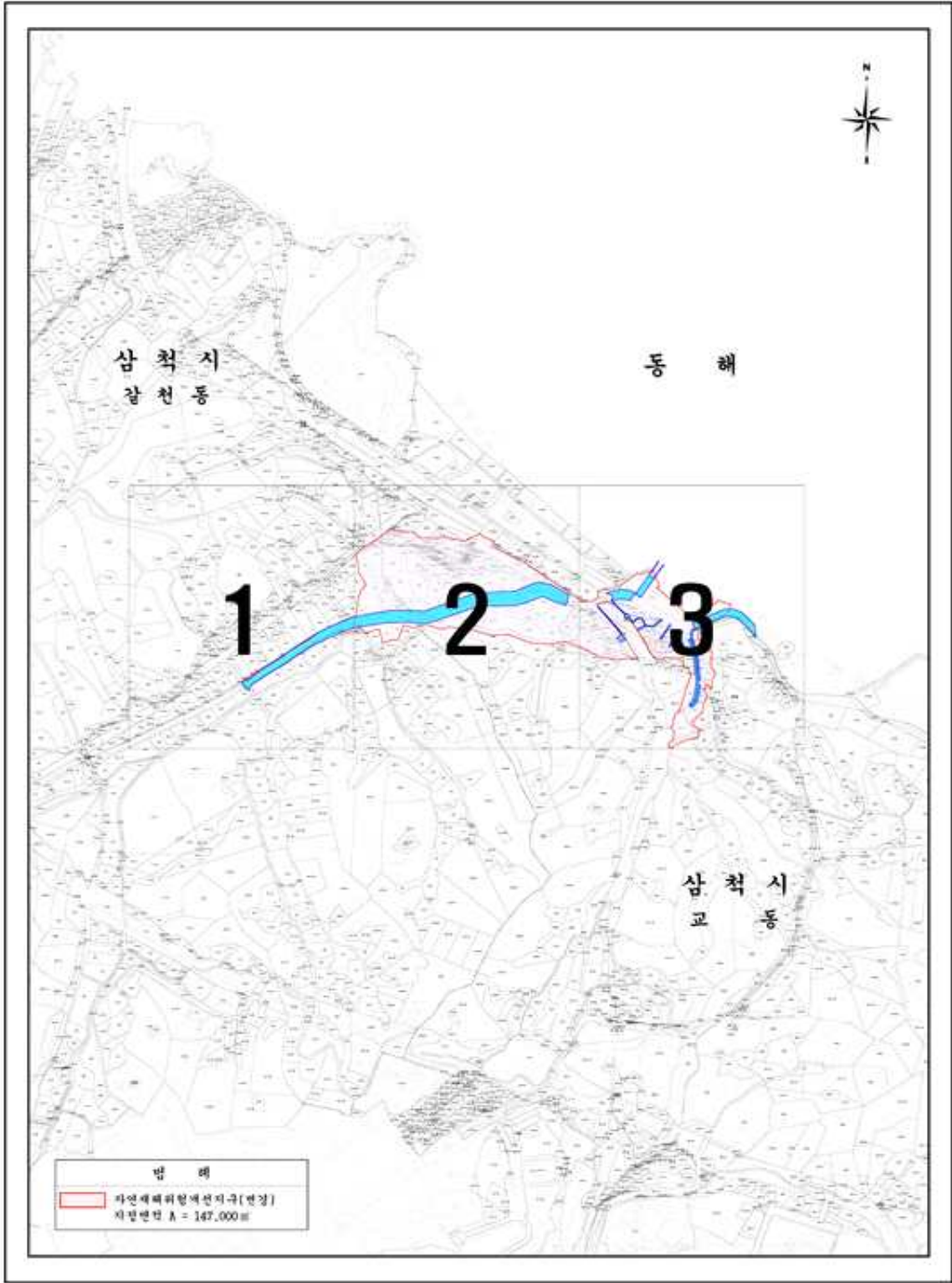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며 만약 부득이하게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재해예방 대책 등을 갖추어 사전협의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570-38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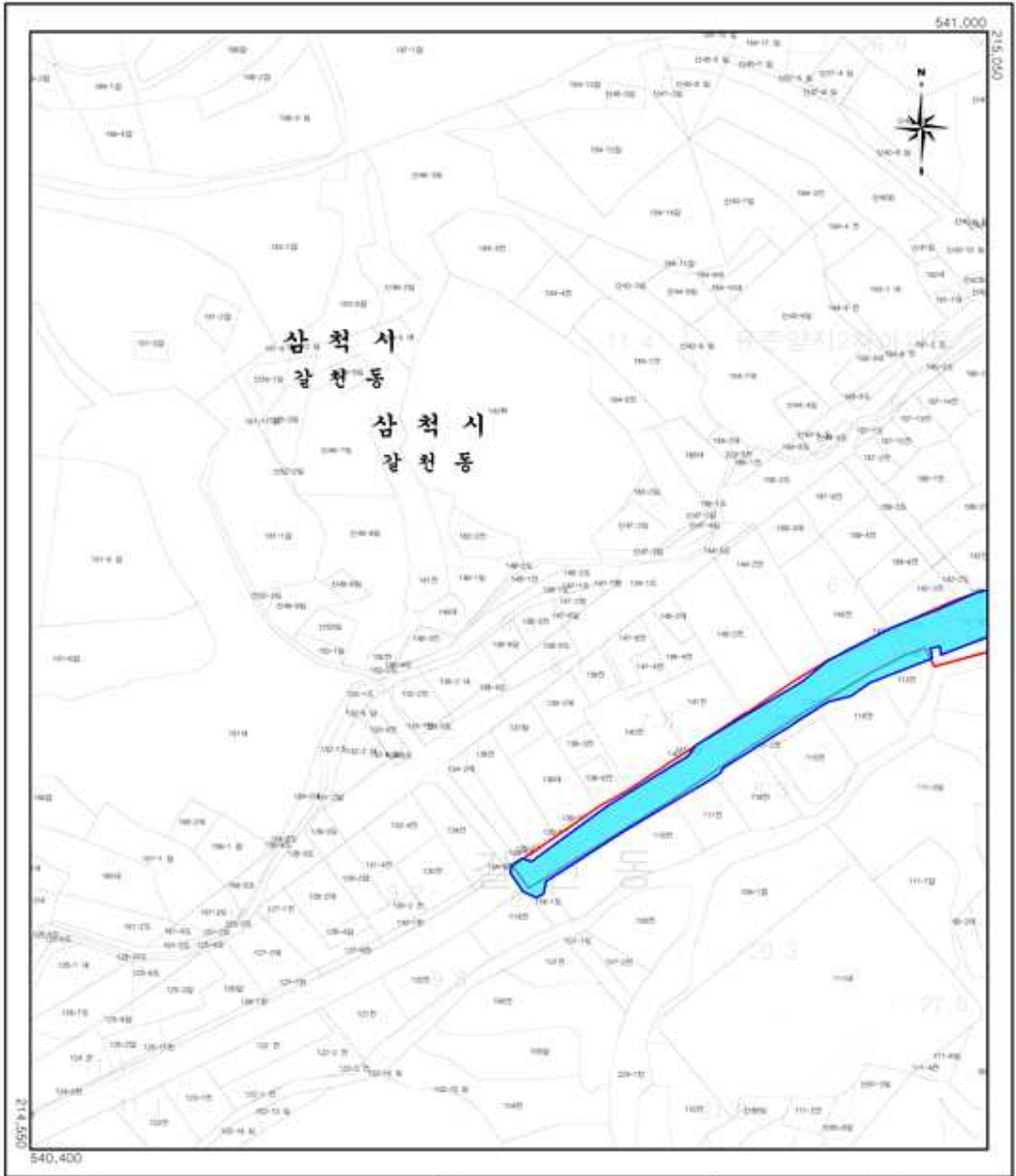
- 붙임 1. 일람도 1부.  
2. 지형도면 고지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람도

축척=1:4,000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1)



<범 례>

..... 행정구역선  
 [Blue Bo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일부)  
 [Red Bo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전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령 제53조 제2항  
 확인일: 2024년 1월 1일  
 확인자:

축척 =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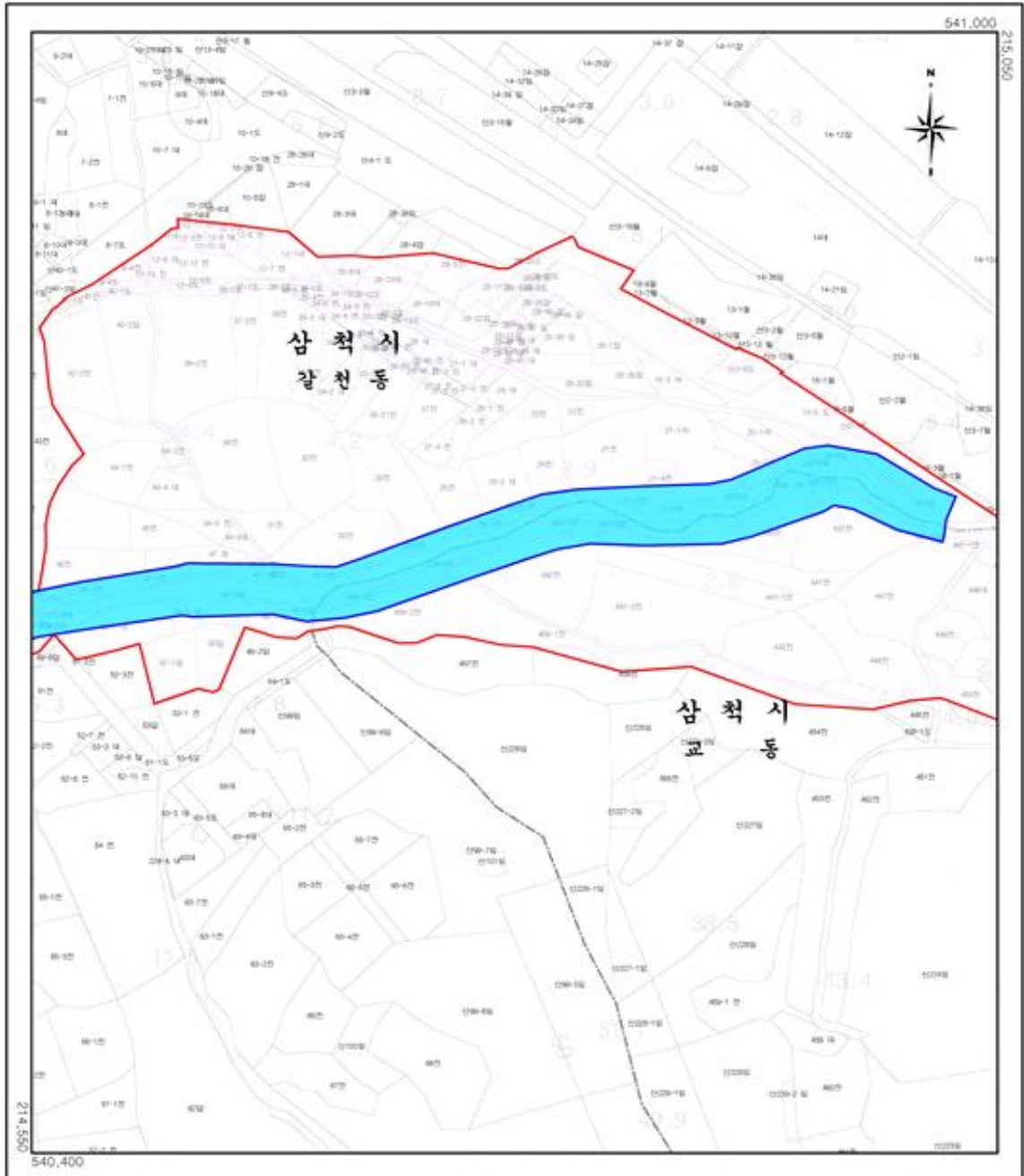


작성일자	삼척시장	작성일자	
고시번호		고시번호	
작성일자	(주)유신	작성일자	2024년 1월
작성한 소류 및 담당자	삼척시장		

<색 인 도>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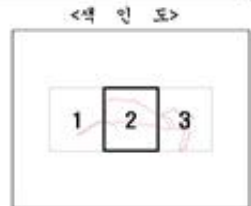
**<범례>**

..... 행정구역선  
 [Blue Bo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일요)  
 [Red Bo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연일)

도시이동규제기본법 제8조제 2항  
 국토이용관리법령 제34조제 1항  
 확인일 : 2024년 1월 1일  
 확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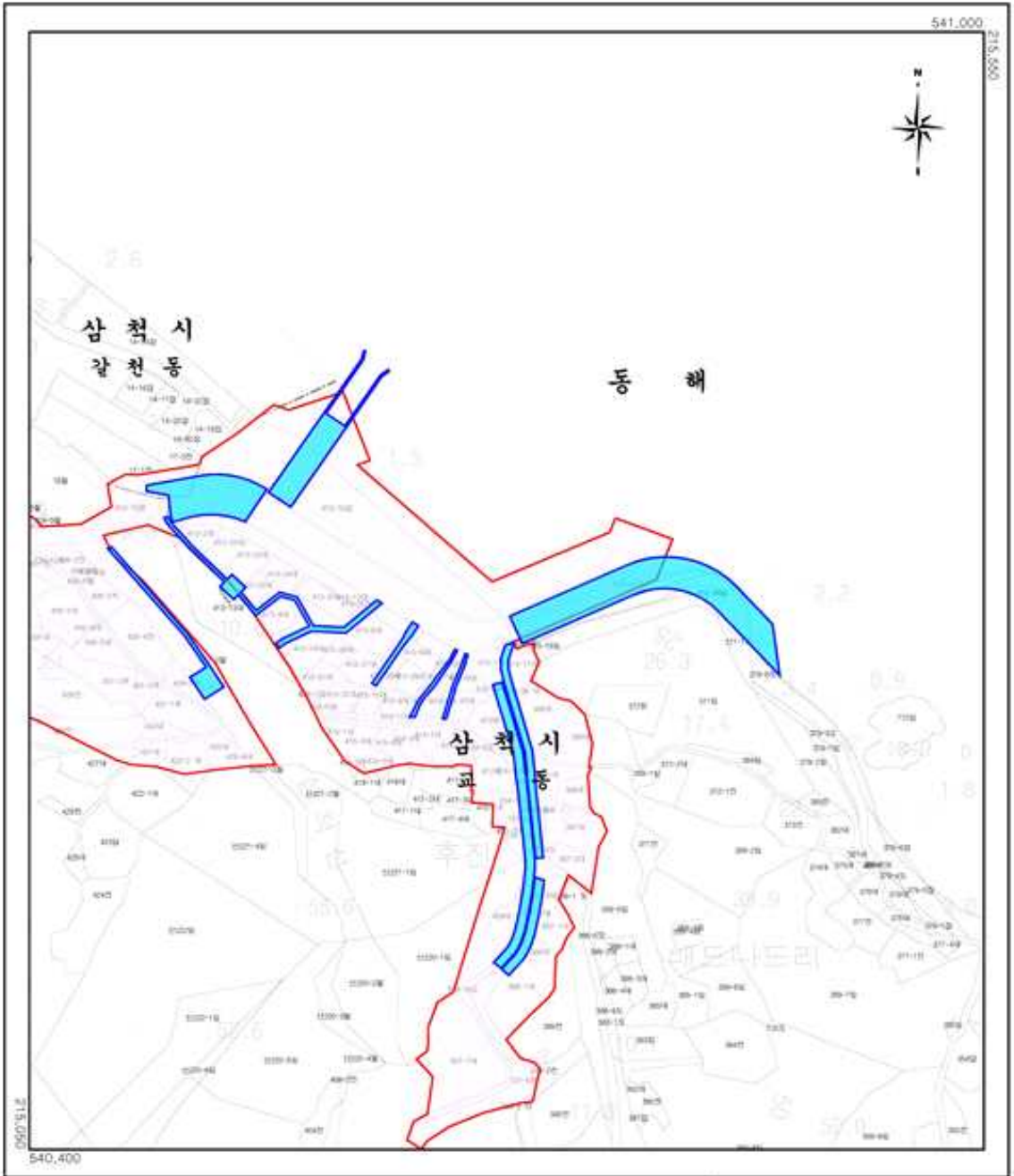
측척 = 1:1,000

지정일자	삼척시장	지정일자	
고시번호		고시번호	
작성일자	(주)유신	작성일자	2024년 1월
제작한 소유 및 발행자	삼척시장		





#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도(지정3)



**<범례>**

..... 행정구역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당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도시이용규제이용범 제8호에 따라  
 국토이용정보관리법제33조 제2항  
 확인일 : 2024년 1월 1일  
 확인자 :

측척 = 1:1,000

작성일자	삼척시장	작성일자	
고시년도		고시번호	
작성자	{주}유선	작성일자	2024년 1월
제작권 소유 및 발행자	삼척시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설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급지(80g/㎡)]

삼척시 공고 제2024-250호

##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삼척시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 삼척시장

1. 재등록 및 폐기 사유 : 성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인증기 교체
2. 재등록 및 폐기 연월일 : 2024. 2. 6.
3.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 2024. 2. 6.
3. 재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재등록 사유	비고
재등록 공인	성내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총)	2.7×2.7 (정방형)		민원실 인증기 교체	
	성내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횡)	2.7×2.7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폐기사유	비고
폐기 공인	성내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종)	2.7×2.7 (정방형)		민원실 인증기 교체	
	성내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황)	2.7×2.7 (정방형)			

**삼척시 공고 제2024-251호**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삼척시장**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삼척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량을 갖춘 합창단원 유인으로 합창단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합창단원 수당 인상 및 연습수당 추가 지급 신설(안 별표 1)

**3. 입법예고기간 : 2024. 2. 7. ~ 2. 2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문화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문화홍보실(문화예술팀)
  - 전화 : 033-570-3225
  - FAX : 033-570-3132

### 5. 그 밖의 사항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비상임 단원 수당(제4조 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수당/월	비 고
지휘자		1,500,000	○ 연습시간 기준 ▶ 주1회(월4회) /회당 3시간 30분 이상 ※ 연습시간 기준 외 회당 2시간 이상 연습 시 연습 수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함.
반주자		1,000,000	
단원	단무장	580,000	
	성악전공 (4년제졸)	600,000	
	파트별 수석	430,000	
	파트별 부수석	400,000	
	일반단원	330,000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253호**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지역 경제 발전과 영상문화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영화제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다. 영화제의 주최 및 주관 등(안 제 5조)
- 라. 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6조~제12조)
- 마. 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안 제13조)
- 바. 영화제 주관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2. 7. ~ 2.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4년 2월 2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문화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 전화 : 033-570-3224
  - 팩스 : 033-570-3132
  - E-mail : yozzang@korea.kr

**5.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영상문화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화제 및 관련 부대행사 개최
2. 영화제 출품작 공모 및 시상
3. 영화 제작 활성화 및 국내외 영화제 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최 및 주관 등) ① 영화제는 삼척시가 주최한다.

② 시장은 영화제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이 영화제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화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영화제 주관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문화홍보실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영상·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운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장이 서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13조(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영화제 출품작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임직원, 출판자, 출판자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영화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영화계 종사자
- 2. 지역 영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 3. 그 밖에 영상·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⑥ 심사위원회는 영화제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영화제의 운영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고, 영화제의 업무·회계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

▣ 의견제출자: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